

[등록번호 : 20080500016]

[최초등록 : 2008. 7. 25.]

[www.dunkindonuts.co.kr](http://www.dunkindonuts.co.kr)

[최종등록 : 2025. 2. 6.]

## [던킨/던킨도너츠]

# 정보공개서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 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서울 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P타워 9층~10층

대표전화 : 080-555-3131

대표FAX : 0505-073-0347

개발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2276-4714

# 목 차

## I. 가맹본부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던킨/던킨도너츠]의 내용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II. 가맹본부의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 현황

1. [던킨/던킨도너츠]를 시작한 날
2. [던킨/던킨도너츠]의 연혁
3. [던킨/던킨도너츠]의 업종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최근 3년간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 수
6. [던킨/던킨도너츠]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양도,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관리 · 감독
9. 광고 및 판촉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VIII.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세부내역**

1. 교육 · 훈련 주요내용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 · 훈련의 주체
4. 교육 · 훈련의 경우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별 지 1. 식품위생법 위반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치 기준

별 지 2.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별 지 3. 점포환경개선

별 지 4. 가맹점 경영평가

별 지 5.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 지 6. 물품 내역(2024년 3월 기준)

별 지 7. 주요물품 공급가격(2023년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장래점포 예정지 인근 점포현황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던킨/ 던킨도너츠 외 1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서울사무실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1)			
	설립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5.6.7.	1986.3.31.	도 세 호	080-555-3131	0505-073-0347
	법인등록번호	131111-0005693	사업자등록번호	303-81-09535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주 소	
그룹 회장	허 영 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5년 6월 7일 ~ 현재	02-2276-6000	02-2276-6600
대표 이사	도 세 호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년 10월 11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사내 이사	이 미 향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년 11월 1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사내 이사	허 진 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년 3월 26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사내 이사	허희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년 3월 28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사내 이사	피터로버트젠슨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년 3월 29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사내 이사	파울로안젤로파사구이니콜라스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년 11월 23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사내 이사	최제임스영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년 3월 28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감사	이민철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년 2월 7일 ~ 현재	080-555-3131	0505-073-0347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계열 회사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외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파리바게뜨(1988. 9. ~ 현재) 파스쿠찌(2003. 11. ~ 현재) 잠바주스(2014. 10. ~ 2024. 8.)	김성한	02-2276-6000
	법인등록번호	110111-0508311	050-5073-0144
계열 회사	(주)에스피씨삼립	빛은 외 3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빛은(2006. 2 ~ 현재) 파빼오(1996. 4 ~ 현재) 르뽀미에(2007. 4 ~ 현재) 잇투고(2014. 2. ~ 현재)	황종현 김범수	02-2276-5000
	법인등록번호	1101111-0090516	0505-073-0504
계열 회사	(주)빅바이트컴퍼니	잠바주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잠바주스(2024. 9. ~ 현재)	이광	-
	법인등록번호	131111-0721934	393-86-02980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여부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인수 ·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던킨/던킨도너츠]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1) 명 칭	던킨/던킨도너츠	
2) 상 호	던킨_____점 / 던킨도너츠_____점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3) 상표(서비스표)		등록일 : 2019. 8. 8. 등록번호 : 4020190075157
		등록일: 2005-10-07 등록번호: 40-0634149-0000
4) 광 고	대중매체(TV, 신문, 잡지등)를 통한 다양한 광고 홍보 활동 및 Promotion 실행	
5) 그 밖의 영업표지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94,941,924	129,551,176	565,390,748	750,721,849	79,222,569	63,569,073
2022년	681,062,389	101,530,284	579,532,106	791,669,387	33,858,793	33,215,358
2023년	656,885,769	99,645,141	557,240,627	706,524,755	-29,025,760	-12,325,479

\* 자세한 내역은 <http://dart.fss.or.kr>에 접속 확인하십시오.[별지5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의 가맹사업 매출액은 영업표지 별 매출자료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현재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재 직 기 간	현 직 책	담당업무
가맹 사업 관련 임원	도세호	대표이사	2023. 10. ~ 현재	비알코리아(주)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미향	사내이사	2018. 11. ~ 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허진수	사내이사	2013. 03. ~ 현재	사내이사	경영지원
	허희수	사내이사	2022. 03. ~ 현재	사내이사	총괄임원
	최제임스 영	사내이사	2022. 03. ~ 현재	사내이사	전략기획본부장
가맹 사업 비관련 임원	파올로안 젤로파사 구이니콜 라스	사내이사	2023. 11. ~ 현재	사내이사	-
	피터 로버트 젠슨	사내이사	2018. 03. ~ 현재	사내이사	-
	이민철	감사	2023. 02. ~ 현재	사내이사	감사업무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6	2	1,814 (상근임원 포함)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비알코리아(주)	가맹사업 경영	1987. 3. 15 ~ 현재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5)
		가맹사업 경영	1995. 1. 15 ~ 현재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6)
대표이사	도세호	비알코리아(주) 대표이사	2023. 10. 11 ~ 현재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5)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6)
특수관계인 (이사)	이미향	비알코리아(주) 이사	2018. 11. 1 ~ 현재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5)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6)
특수관계인 (이사)	허진수	비알코리아(주) 이사	2013. 3. 26 ~ 현재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5)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6)
특수관계인 (이사)	허희수	비알코리아(주) 이사	2022. 3. 28 ~ 현재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5)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500016)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파리크라상	가맹사업경영	1988. 9. 30 ~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200064)
		가맹사업경영	2003. 11. 5 ~현재	파스쿠찌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90100251)
		가맹사업 경영	2014. 10. ~2024. 8.	참바주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 20140964)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에스피씨 삼립	가맹사업 경영	2006. 2. 24 ~현재	빛은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200076)
		가맹사업 경영	1999. 6. 12 ~ 현재	따빠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20080200109)
		가맹사업 경영	2007. 8. 22	르뽀미에 가맹사업경영

			~ 현재	(등록번호:20080200110)
	가맹사업경영	2014. 7 ~ 현재	잇투고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 20140503)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빅바이트컴 퍼니	가맹사업 경영	2024. 9. ~현재	잠바주스 가맹사업경영 (등록번호: 20140964)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DUNKIN'	당사의 통상사용권 수령 完	등록일: 2019. 8. 8.	등록번호 : 4020190075157	디디 아이피 홀더 엘엘씨	2028.1.30. (2028.1.30)
DUNKIN' DONUTS		등록일: 2005. 10. 7.	등록번호: 4006341490000		2025.10.7. (2025.10.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 현황

### 1. [던킨/던킨도너츠]를 시작한 날 : 1995년 1월 1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1994년 10월 8일)

## 2. [던킨/던킨도너츠]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알코리아(주)	던킨/ 던킨도너츠	김 영 덕	2000. 11. 2~ 2002. 6. 1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3-4
		조 상 호	2002. 6. 17~ 2019. 3. 27	
		김 창 대	2019. 3. 27~ 2021. 3. 25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강남피타워 9층, 10층
		도 세 호	2021. 3. 25~ 2023. 02. 17	
		이 주 연	2023. 02. 17~ 2023. 10. 11	
		도 세 호	2023. 10. 11~ 현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강남피타워 9층, 10층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1

## 3. [던킨/던킨도너츠] 업종

영업표지	업종	
던킨/던킨도너츠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제빵	도넛, 핫샌드위치, 커피, 음료 등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718	613	105	707	633	74	690	631	59
서울	126	89	37	118	90	28	110	86	24
부산	37	28	9	35	26	9	33	29	4
대구	28	26	2	30	30	0	32	32	0
인천	42	23	19	40	26	14	40	28	12
광주	15	13	2	16	15	1	16	15	1

대전	23	20	3	26	23	3	27	24	3
울산	16	16	0	17	16	1	16	15	1
경기	211	186	25	213	197	16	210	197	13
강원	20	20	0	24	24	0	23	23	0
충북	25	24	1	24	23	1	25	25	0
충남	37	36	1	36	36	0	36	36	0
전북	25	25	0	23	23	0	23	23	0
전남	25	24	1	22	22	0	20	20	0
경북	36	33	3	33	33	0	31	31	0
경남	26	25	1	27	26	1	27	26	1
제주	20	19	1	17	17	0	16	16	0
세종	6	6	0	6	6	0	5	5	0

## 5. 최근 3년간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 수

(단위: 개)

연 도	연 초	신규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증 감
2021	579	90	26	30	30	613	34
2022	613	73	19	34	34	633	20
2023	633	43	21	24	40	631	-2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던킨/던킨도너츠 홈페이지](http://www.dunkindonuts.co.kr/)(www.dunkindonut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던킨/던킨도너츠]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던킨/던킨도너츠] 외에도 [1]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모두 [7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등록번호 )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1. 12. 31	22. 12. 31	23. 12. 31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주)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1,551/75	1,653/67	1,687/65

		(20080500015)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20080200064)	제과제빵	3,402/27	3,419/27	3,389/26
		파스쿠찌 (20090100251)	커피	498/25	494/27	477/32
		잠바주스 (20140964)	음료(커피 외)	8/23	8/22	8/21
	(주)에스피씨 삼립	빛은 (20080200076)	기타외식	48/9	44/6	35/5
		따삐오 (20080200109)	제과제빵	55/0	47/0	42/0
		르뽀미에 (20080200110)	제과제빵	2/2	2/2	2/2
		잇투고 (20140503)	패스트푸드	0/0	0/0	0/0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사업자 한 명(점포)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매출액은 [366,161]천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1,984,267]천원에서부터 [55,378]천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부가세제외)					비고 (제외점포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631	366,161	18,100	1,984,267	338,556	55,378	1,988	39
서울	86	445,934	24,013	1,745,954	338,556	136,480	5,264	5
부산	29	380,759	21,515	1,292,020	107,914	85,714	8,571	2
대구	32	296,654	14,640	781,980	55,856	107,535	3,375	3
인천	28	379,888	17,686	621,325	41,365	155,391	5,298	4
광주	15	342,406	18,956	931,812	95,548	217,072	8,697	2
대전	24	274,734	12,740	452,337	57,417	123,947	4,545	1
울산	15	262,946	13,833	434,694	64,052	98,990	3,918	0

경기	197	394,304	20,330	1,984,267	265,001	55,378	3,335	11
강원	23	358,415	15,939	672,094	77,242	160,688	4,073	1
충북	25	349,112	15,518	919,669	118,468	187,164	2,674	2
충남	36	369,173	18,406	924,172	106,151	65,656	1,988	3
전북	23	367,576	18,767	1,782,525	226,244	135,169	5,632	2
전남	20	309,274	12,578	620,319	32,419	161,802	4,847	1
경북	31	314,212	13,235	533,018	93,781	110,920	6,013	0
경남	26	273,551	13,731	415,408	46,186	104,342	5,321	1
제주	16	316,910	13,535	588,454	81,525	73,511	2,414	1
세종	5	313,089	12,081	409,849	17,868	245,750	9,518	0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2.7% 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절에 따른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업종특성상 현실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2023년 6개월 이상 운영한 점포에 한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합니다.]

## 8.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던킨/던킨도너츠]의 바로 전 사업년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비고
2023년 12월 31일	631점	1,944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6]곳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무소소재지	대표자명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2023년 가맹점수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강남피타워 9층,10층	도세호	02) 2276-3131	서울, 경기, 인천, 강원	334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1				
부산사무소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6 교원아카데미빌딩 10층	도세호	051) 461-0048	부산, 울산 경남	70
대구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회관 12층	도세호	053) 424-1894	대구, 경북	63
대전사무소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55 16층	도세호	042) 485-7803	대전, 충북, 충남, 세종	90
광주사무소	광주시 광산구 장신로 85 수영빌딩 6층	도세호	062) 236-3031	광주, 전북, 전남, 제주	74

- \* 위 지역사무소는 가맹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형태이며, 가맹사업법 제2조 제7호 및 8호에서 정하여 있는 가맹지역본부 및 가맹중개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 \* 또한 위 지역사무소의 가맹본부 직원은 가맹점 관리 및 가맹점 모집의 권한만 있을 뿐 가맹계약 체결의 권한을 갖지는 아니합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2023년]에 [던킨/던킨도너츠]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6,728,017]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천 원, 부가세미포함)

내 역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 고
합 계	16,728,017			
온라인 광고비				각종 온라인 광고 비용
배달 광고비				배달매체 月 광고 비용
소 계	630,445			
협찬비				PPL/이벤트 등 각종 협찬비
판촉행사				판촉/신제품 등 행사 정산
기타				상생/폐기지원, LSM 등
소 계	16,097,572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 소	전화 번호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99-1114

귀하(가맹점사업자)의 예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하나은행 에스크로 홈페이지([www.hanaescrow.com](http://www.hanaescrow.com))에 가맹점사업자를 사전 등록함
- ② 가맹점사업자는 위 홈페이지의 "조회센터" →B2B→프랜차이즈B2B에서 에스크로에 가입하고, 가맹비 및 보증금을 입금함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손괴·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94,950,000~264,45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부가세 포함).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임차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견적에 의거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유	비 고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또는, 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	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 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  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  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기획관리비	3,300				
교육비	1,650 추가 인원당 330				

\* 건물 및 대지 임차료는 가맹점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아님)

### < 임차형 >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가맹비	5,500
교 육 비	1,650
기획관리비	3,300
점포 임차료 및 수수료	점포마다 상이
시설 등 임차료 및 수수료	시설 등 투자비에 따라 상이
임대차 보증금	점포마다 상이
합 계	10,450(점포, 시설 임차 관련 금액 제외)

※ 임차형 매장은 당사가 점포, 시설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임차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점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당사의 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 및 점포, 시설 등의 임차를 위하여 점포의 원 임대인과 같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 포함]를 지급받는 형태로, 가맹본부에서 임차형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한 매장이 있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가맹본부가 투자하지 않은 점포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 일반 가맹점의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로 점포 임대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익분배형>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금액
가맹비	5,500
교 육 비	1,650
기획관리비	3,300
점포 임차료 및 수수료	점포마다 상이
시설 등 임차료 및 수수료	시설 등 투자비에 따라 상이
임대차 보증금	점포마다 상이
합 계	10,450(점포, 시설 임차 관련 금액 제외)

※ 수익분배형 매장은 당사가 점포 임대비용 또는 시설 구비비용 등을 투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투자한 점포/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이익(매출액-매출액×원가율)의 20%(가맹본부가 시설만 투자한 경우) 또는 40%(가맹본부가 점포 및 시설에 투자한 경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형태로, 가맹본부에서 수익분배형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한 매장이 있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가맹본부가 투자하지 않은 점포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 일반 가맹점의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로 점포 임대비용 및 시설 구비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 가맹비

귀하는 당사로부터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물품, 인력, 판촉, 홍보, 신규반품, 초기 운영매뉴얼 등을 지원 및 제공받는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표지의 사용,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 기타의 정보 제공 및 영업지도 등은 최초가맹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맹비는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위의 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모두 소모됩니다.

#### - 기획관리비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확정한 가맹점 실내외 인테리어, 설계도면 등에 따른 관련 공사를 감독할 수 있고,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시 기획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 중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획관리비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 교육비

귀하 및 그 종업원[귀하를 포함한 과정별 기준인원 준수]은 가맹점 개점 예정일 2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교육비(강사료 및 시설사용료 등)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의 요청에 따른 수강 신청인원이 점포별 최대 기준인원(3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보증금 (단일항목)	10,000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 종결 시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	5일 단위 결제 점포
	40,000			월 단위 결제 점포

※ 5일 단위 결제 점포의 경우 10,000천원, 휴게소 등 월 단위 결제 점포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을 40,000천원으로 하고 월출하예상금액 × 2배가 40,000천원 이상이거나(결제 전까지 미정산되는 제품 출하액을 고려) 본사의 지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담보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이행보증금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 계약 체결 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개신 시 가맹계약 만료 전의 매입대금 또는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점포 이전 또는 확장)시 매입대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기간 중 매출 활성화로 인하여 1개월 기준 일평균 매입대금의 5일간 합산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종료 시 전액(이자제외)이 귀하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반환되게 됩니다.

### ※ 임차형 매장

당사는 개별적인 모집절차를 통해 점포 및 시설 사용을 위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형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임차형 매장은, 계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점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개설조건에 따라 개설됩니다.

이 형태의 매장의 경우에는 가맹계약기간이 점포임대차 계약기간 등 여건에 따라 일반적인 가맹점의 경우와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임차료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수익분배형 매장

당사는 개별적인 모집절차를 통해 당사가 점포 또는 시설을 마련한 후, 그 대가로 이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이익(매출액 - 매출액 × 원가율)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익분배형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수익분배형 매장은, 계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점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개설조건에 따라 개설됩니다.

이 형태의 매장의 경우에는 가맹계약기간을 점포임대차 계약기간 등 여건에 따라 일반적인 가맹점의 경우와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임차료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약정에 따라 매장 내 CCTV의 설치의무가 부과되거나, 영업지도 및 감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금액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가맹비	5,500
계약이행 보증금	10,000~40,000(VAT대상 아님)
교육비	1,650
기획관리비	3,300
합 계	20,450~50,450

- ※ 기획관리비는 기존 던킨/던킨도너츠 점포를 양수하며 전면리뉴얼을 실시하지 않고 개설할 경우에는 가맹금 부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계약이행 보증금의 정산방식이 5일 단위가 아니거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및 그 범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각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예치기관에 예치한 경우 및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과 협력업체는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6m<sup>2</sup> 기준 >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 대상	추정 비용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기한	비고
①필요장비 (장비, 도넛진열장 등)	가맹본부	63,000 ~ 67,000		입고완료 후 즉시	점포 특성에 따라 변동
②정착물 (간판 및 사인물)	해당업체	6,000 ~ 9,000		시공완료 후 즉시	점포 특성에 따라 변동
③ 인테리어	해당업체	63,000 ~ 76,500	3,150 ~ 3,830	시공완료 후 즉시	점포 특성에 따라 변동
④제작가구 (카운터, 수납장 외)	해당업체	14,500 ~ 21,000		시공완료 후 즉시	점포 특성에 따라 변동
⑤ 의탁자	해당업체	7,000 ~ 10,500		입고완료 후 즉시	점포 특성에 따라 변동
⑥ 초도 제·상품 비용	가맹본부	12,000 ~ 18,000		입고완료 후 즉시	제, 상품
⑦기타 비용	자체업체	9,000 ~ 12,000	-	-	A/C, 오디오, 블라인드 외
합 계		174,500 ~ 214,000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1) 입지 선정 주체 : 가맹희망자가 개설 가능한 입지를 직접 물색, 입지 선정을 주도하고, 당사와 협의 후 입지 최종 결정
- (2) 입지 선정 기준 : 가맹희망자가 직접 물색, 선정한 입지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담당자가 점포 개설 가능한 면적 (최소 66m<sup>2</sup>) 여부 및 기타 입지 현장실사 (점포 위치, 점포형태, 배후 상권내역, 유동인구 파악) 후 입점 타당성 분석, 이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
- (3) 개설상담 : 던킨/던킨도너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www.dunkindonuts.co.kr)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채용 기준	교육 기준
가맹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아닐 것</li><li>- 만 19세 이상일 것</li><li>- 보건증발급이 불가한 질병이 없는 경우</li></ul>	[교육 훈련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교육훈련의 불가 사유 ① 임신 중(7개월 이상)인 경우 ② 보건증 발급이 불가한 질병이 있는 경우
종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만 19세 이상일 것</li><li>- 보건증발급이 불가한 질병이 없는 경우</li></ul> <p>※ 단,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고용시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근로시간 및 환경,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p>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고용에 있어 노동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그 종업원(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과정별 기준인원 준수)은 개점일 2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가맹점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시 교육비(강사료 및 시설사용료 등)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 요청에 따른 수강신청인원이 점포별 최대 기준 인원(3명)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추가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도중에 중단하게 될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잔여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준수 등 종업원과의 고용 및 근로관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의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사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종업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실제 물품내역 및 공급업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가구, 간판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중 하나 또는 수개로부터 입찰을 받거나 직접 선택 후 개별계약을 통하여 시공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시공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필요장비는 가맹본부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장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임의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8) 가맹금 분할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

(계약갱신으로 당해 가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내역과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	-------	-----	------	------	-------------	-----

총 계														
1.상표사용료	해당사항 없음													
2.리스료	해당사항 없음													
3.광고 분담금	광고분담금은 판촉활동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분담 세부 내역은 [9.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u>(가맹본부와 비용 분담하는 광고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되지 아니함)</u>													
4.교육훈련비	해당사항 없음													
5.간판류 임차료	해당사항 없음													
6.영업지역보장금	해당사항 없음													
7.리모델링 비용 (영업표지변경)	<p>1. 점포환경개선 시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li>-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여 사전 협의 후 가맹본부의 합의를 얻은 경우</li> </ul> <p>2. 점포환경개선 비용 및 범위 : 점포환경개선 진행 시점의 인테리어 사양 및 비용 적용</p> <p>3. 비용부담 : 가맹점 사업자</p> <p>단,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40%, 수반되지 않는 경우 위 각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지원함</p> <p>위 지원금은 리모델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종료(계약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p> <p><b>4. 반환조건 : 점포환경개선 시행이 불가하여 시행을 안 한 경우</b></p> <p><b>5.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점포환경개선 시행 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아니함</b></p>													
8.재고관리 비용	해당사항 없음													
9.회계처리 비용	해당사항 없음													
10.장비유지비용 (POS)	<table border="1"> <tr> <td>비알코리아(주)</td> <td>528,000 (부가세포함)</td> <td>POS 설치 시</td> <td>3년이내 계약종료</td> <td>명의이전/ 변경의 경우</td> </tr> <tr> <td>(주)진코퍼레이션</td> <td>실비</td> <td>POS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td> <td></td> <td></td> </tr> </table>	비알코리아(주)	528,000 (부가세포함)	POS 설치 시	3년이내 계약종료	명의이전/ 변경의 경우	(주)진코퍼레이션	실비	POS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			<p>1. 비용내역 : POS설치 후 2~3년차 유지보수비용</p> <p>2. 비용의 지급 : POS 설치 후 2년 분 선납</p> <p>3. 3년 경과 후 가맹본부 유지보수료 부담</p>		
비알코리아(주)	528,000 (부가세포함)	POS 설치 시	3년이내 계약종료	명의이전/ 변경의 경우										
(주)진코퍼레이션	실비	POS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												
11.음원사용료	<p>비알코리아(주) 또는 공급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배경음악의 기준 제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 권장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시 합법적 음원사용료를 BGM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 (가맹점사업자 - 공급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수금업무 무상대행 가능)</li> <li>- 가맹본부와 계약된 BGM 제공 전문업체의 음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사용료는 가맹본</li> </ul>		선택 사항										

		부에 지급	
12. 상품권 및 모바일 교환권 (기프티콘 등)	비알코리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액면대금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부분 제외 입금 정산</li> <li>- 부담금 : 지류상품권은 부담부분 없음, 모바일 교환권은 수수료의 50% 부담</li> <li>- 부담비율 및 수수료율 변동시 POS 등 공지</li> </ul>	
13. 임차 (점포/시설) 수수료	비알코리아(주)	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임차형 점포에 한함
14. 투자 수수료	비알코리아(주)	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의 대가로서 매출이익(매출액-매출액 × 표준원가율)의 20%(본부가 시설만 투자시) 또는 40%(본부가 점포까지 투자시)를 수수료로 지급	수익분배형 점포에 한함
15. 해피스테이션	비알코리아(주)	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매월 5만원 부담	

\* 가맹본부는 추가적인 제휴를 하거나 제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분담비율은 통상 가맹본부 50% 이상, 가맹점사업자 50%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1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 이전시 이전에 따른 비용(인테리어, 간판, 가구 및 장비설치 등)이 발생하며 이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구입 품목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물품공급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또는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매입가)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합니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는 평균 차액가맹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2023년 6개월 이상 운영한 점포를 대상으로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자체제작 물품을 제외하고 일반물품 등으로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및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차액가맹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회계처리, 재고 관리 등에 관한 가맹점사업자 감독 – 해당사항 없음

- 4) 해피포인트 카드 제도 : 당사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해피포인트 적립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2조 해피포인트카드 운영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제 32 조 (해피포인트카드 운영사항)

1. 가맹점사업자는 해피포인트 카드회원이 점포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1,000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구체적인 비율은 회원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다)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 하고, 회원의 적립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사용된 포인트 전부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정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회원의 적립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으며 구매에 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도 추가로 적립하지 않는다.
2. 해피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는 적립금, 통신비용, 해피포인트카드 시스템 운영비용(신청서 제작 및 입력비용, 080서비스 운영비용, VAN 사용료 등)을 부담하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적립금의 50%, 해피포인트카드의 시스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최종적으로 적립금의 50%, 통신비용을 부담한다.
3. 적립금 및 포인트 사용금의 정산은 5일 단위로 한다.
4.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회원약관에 따라 실효된 적립금을 해피포인트카드 광고선전비 또는 시스템 운영 제반 비용 등 해피포인트카드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해피포인트카드 시스템과 적립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섹타나인’은 회원의 동의를 받아 기부희망자의 적립금 중 10%를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활용내역을 ‘섹타나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하여 공지한다. 또한 ‘섹타나인’은 회원에게 공지 후 사회공익활동을 위하여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을 현금화하거나 이를 관련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6.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에게 해피포인트제도와 기타 할인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의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단, 가맹본부는 폐점일전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사용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내역 변경에 따라 포인트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 작업을 거쳐 처리절차 합의내용에 따라 당월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한다.
9.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해피포인트카드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0.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접수 받은 해피포인트카드 신청서의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의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서면 또는 POS를 활용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12.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기준일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된 계시물 또는 POS 등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13. 가맹본부는 본조에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14.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 위반하여 포인트를 부정하게 적립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의 피용인, 이행보조자,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를 받는 자가 제1항에 위반하여 포인트를 부정하게 적립하지 않도록 교육,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해피오더 및 배달서비스 제도

- 당사는 고객의 주문 접근성 향상을 통한 매출 확보를 위해, 고객이 모바일 주문시스템(이하 “해피오더”이라 합니다) 및 전화주문을 통하여 제품을 미리 주문한 뒤 제품을 수령하거나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은 자발적인 의사로 해피오더 및 배달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주문받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피오더 서비스 참여”라고 합니다), 해피오더 서비스 참여로 인한 권리, 의무관계는 별도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비스 내용의 변경시에는 POS에 이를 안내하며, 가맹점은 자유롭게 해피오더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해피오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함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해피오더 및 배달 시스템 관련 가맹점 및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피오더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가 주문시 제품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일반적으로 제품 결제 금액의 10%이나 구체적인 비율 또는 금액은 연계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업체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소비자가 직접 점포에 전화 주문하는 경우 해피오더 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반 매장결제와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해피포인트 적립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수수료는 가맹점이 지급하되 가맹본부가 수수료 중 50%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나) 배달서비스 이용시 배달업체에 지급하는 배달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촉을 위해 개별 약정으로 가맹점 및 가맹본부가 위 배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각각 지원 배달비용의 50%를 부담합니다.

#### 6) 해피기프트카드(충전식 선불카드)

- 당사는 소비자의 결제수단 확장을 위하여 충전식 선불카드인 해피기프트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소비자의 해피기프트카드 또는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에 충전된 금액으로 구매결제를 승인하며, 가맹본부로부터 결제금액을 정산 받습니다.

가맹점은 해피기프트카드 이용에 따라 업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6.5% 지급하되 가맹본부가 수수료 중 50%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담 비용 내역	비 고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時, 추가 부담 비용	재계약시 당사 규정(매출규모에 따른 차등)에 의해 계약이행보증금 증액 가능 (10,000,000원~15,000,000원)	
가맹점 운영권 이전 時, 부담 비용	없음	
기타 부담 비용	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경우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던킨/던킨도너츠]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비알코리아(주)]에 지급해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대금, 환경개선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분 등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전에 당사에 통지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 및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하며, 오픈지원비,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던킨/던킨도너츠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당사 소유의 모든 집기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1) 미수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 즉시 상환

2) 가맹계약 종료 후 2주 이내에 점포 내 · 외부 영업표지 제거 및 개수 기타 직 · 간접적인 방법에

-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가맹점사업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3)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적용된 모든 물품에 대한 사용·게시 금지 및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제거
  - 4)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 등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의 반환
  - 5) 가맹본부의 소유물 또는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물품의 반환
  - 6) 영업표지의 제거, 물품의 반환·폐기 등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던킨/던킨도너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 및 별지 6.에 기재된 물품 중 거래 강제 품목의 경우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하자, A/S 등의 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제품/상품/원재료/판촉물/포장재 등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구비한 물품 중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위생용품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신제품 출시, 소지자 기호 변동,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 및 별지 6.에 기재된 내역은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가 2023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 중 주요품목 공급가격은 별지 7.의 내역과 같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던킨/던킨도너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상품·용역	가맹본부 제공 상품 일체(제품등 내역 홈페이지 및 POS 참고)

제한내용 및 조건	<p>1. 상표권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및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p> <p>2. 제한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담배 판매 금지</li> <li>② 음료 자판기 설치 금지 등</li> <li>③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해가 되는 물품</li> <li>④ 가맹본부의 통일적 이미지를 해하는 물품</li> <li>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공급물품 또는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품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타 제품</li> </ul>
위반시 책임	<p>1. 위 제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책임 : 계약해지</li> <li>② 근거 : 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 7) 등</li> </ul> <p>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계약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사항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던킨/던킨도너츠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귀하가 홈페이지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 ② 인수합병 등으로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도넛 및 음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던킨/던킨도너츠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25쪽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 협의	별지(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빨간 실선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 한하며, 경계선은 불포함)

단, 경계선 안에 존재하는 백화점, 할인점, 행사매장, 양판점, 관공서, 학교, 기업, 병원, 터미널, 역사, 호텔, 리조트, 영화관, 테마파크, 워터파크, 놀이공원, 전시관 등의 특수공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지역은 상권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영업지역 외에는 향후 타 점포가 입점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 개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개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던킨/던킨도너츠’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채널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편의점	GS25	냉동 미니도넛, 베이글칩, 팝콘	
편의점	CU	커피빈, 팝콘	
편의점	미니스톱	냉동 미니도넛, 베이글칩, 팝콘	
편의점	세븐일레븐	냉동 미니도넛, 베이글칩, 팝콘	
편의점	이마트24	냉동 미니도넛, 베이글칩, 팝콘	
SSM	GS슈퍼	미니냉동도넛, 보스톤파이	일반 물품 공급 거래에 해당
SSM	롯데슈퍼	미니냉동도넛, 보스톤파이	
SSM	이마트에브리데이	미니냉동도넛, 보스톤파이	

할인점	롯데마트	미니냉동도넛,보스톤파이	
할인점	롯데마트맥스	미니냉동도넛,보스톤파이	
할인점	메가마트	미니냉동도넛,보스톤파이	
할인점	이마트	미니냉동도넛,보스톤파이	
할인점	홈플러스	미니냉동도넛,커피캡슐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11번가	11st.co.kr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일반 물품 공급 거래에 해당함
	네이버스토어	sell.smartstore.naver.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옥션	auction.co.kr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올리브영	oliveyoung.co.kr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위메프	wemakeprice.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지마켓	gmarket.co.kr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지에스샵	gsshop.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카카오	store.kakao.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티몬	tmon.co.kr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해피마켓	celectory.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현대이지웰	hyundaiezwel.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그립컴퍼니	grip.show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에너지바	
	지니웍스	lguplus.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현대홈쇼핑	company.hmall.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홈앤쇼핑	hnsmall.com	냉동도넛, HMR류, 스틱커피, 캡슐커피, 커피원두, 캡슐머신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In-shop의 경우(대형매장 및 백화점, 할인점등의 내부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해당 임대관리인(회사)의 MD개편 등 가맹본부와 무관한 사유로 점포의 이전, 확장, 리뉴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또는 전화 주문 및 배달서비스 운영(영업지역 보호규정 제외)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온라인 또는 전화 주문, 이에 따른 배달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의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온라인 또는 전화 주문, 이에 따른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은 온라인 주문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가맹점 중 제품을 받을 매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고객에게 직영점 또는 타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객의 구매 매장 선택에 따른 것으로 영업지역과는 무관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해피오더” 및 배달 시스템 이외의 온라인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해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품질 관리, 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온라인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한 영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백화점, 병원,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군부대 등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가맹본부는 모든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년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73.2%	25.9%	0%(없음)	0.9%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을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의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없음)	10.4%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초도 계약 기간 : 3년
- 갱신 계약 기간 : 1년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관련 활동을 계약갱신 여부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 8 ]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조 35조
○ [던킨/던킨도너츠]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21조 21조의2 21조의3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2조
○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별도의 최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즉시 본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p>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li> <li>○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li> <li>○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요청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li> <li>○ 가맹계약서 [별지 1]에서 정한 즉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p>22조</p>
--	------------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본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6조 3항
○ 천재지변,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된 점포시설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6조 2항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8조 1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을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미수하거나, 5일 단위 결산청구 대금을 3회 이상 지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 가맹계약서 [별지1]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라.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 가맹본부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36조 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가. 항목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36조 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인수하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통지 후 검토를 통한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확정전, 양도인은 가맹본부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물품대금의 미수금, 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잔여금액, 등)가 정산되어야 하며, 만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도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도가 확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확정시점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주문/공급이 이루어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 3)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대리행사	당사 승인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본부에 대한 서면 승인 요청 - 가맹본부의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상속	불가능 (단, 지정인과 가맹계약 체결 요청 가능)	-		

#### ※ 대리권

1. 대리권 행사가능기간 : 가맹계약기간 내
2. 대리권 권한범위 : 가맹계약 행위외의 점포운영 권한
3. 구체적인 절차 : 해당사항 없음

※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또는 사망 간주시 자동 종료되고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상속인 중 1인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가맹본부에게 상속인이 지정한 자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던 가맹점 점포에 대하여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7조 사망에 따른 계약 종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시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제35조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2)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제36조 제1항의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3)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양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인의 가맹사업 관련 의무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4) 양수인이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5)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성 또는 적성 검사 요건, 기타 정보공개서가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6) 양도인의 양도 조건이 양수인의 기대수익을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
- 7) 기타 양수인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지정한 자와 가맹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상속인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를 허락하지 않는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상속인이 지정한 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3) 상속인에게 가맹계약서 제35조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또는 제36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던킨/던킨도너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던킨/던킨도너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3:00 (16시간)	365일 (연중무휴)	문의: 담당 사업팀 (가맹지역본부 일반정보 참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일 3일 전부터 휴업기간을 매장외부에 게재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반도 및	담당팀	비고
------------	-------	------	-----	----

		시기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주일	각 지역 영업팀	
점포 노후, 손상부분 개/보수	담당자 매장 방문 → 개, 보수사항 확인 → 가맹점사업자 내용 확인 및 보수	수시	담당 SV. SC, 식품안전팀	
친절도	매장 암행방문(위탁업체) → 주문 → 친절도 확인 → 점검리스트 작성 → 완료	1회/반기	교육팀 (위탁업체)	
품질 관리 및 위생점검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식품안전팀	
위생 부진 점포 자체 교육 실시	대상점포 선정(기준위생점수 80점 미만) → 본사 직원 점포 방문 → 자체 교육 실시	-	각 지역 영업팀	
LSM (점포 자체 판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와 협의하에 진행하는 경우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담당자와 가맹점사업자 사전 협의 → 직선거리 500m 내 직, 가맹점 동의 → 가맹본부 승인 → 행사진행 → 비용정산(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5:5부담)</li> <li>- 가맹점사업자 부담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판촉 시행 계획 마련 → 가맹본부에 협의 진행 요청 → 직선거리 500m 내 직, 가맹점 동의 → 협의 완료 후 행사진행 → 가맹점사업자 전액 비용부담</li> </ul>	-	각 지역 영업팀	
노무 점검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담당 SV. SC, 외부 근로 점검업체	

당사는 매장청결, 친절도, 품질관리 및 위생점검 등의 점수를 종합하여 [별지 4]와 같이 가맹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 근로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요구, 관련교육 수료 요구 기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던킨/던킨도너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분담금 확정	대중매체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부담	없음				
개별 행사	HPC운영	50%	50%				
	판촉물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절차시 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li> <li>- 비율이 공지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비율로 안분.</li> </ul>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할인(쿠폰) 행사						
	증정행사						
	제휴행사 (수수료발생)						
	기타 개별행사						

\* 단.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판단에 따른 상품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판촉물비용:** 판촉물비용이란, 판촉물행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판촉물제작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판촉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기까지 소요한 모든 비용으로서, 판촉물의 구입대금·보관비·관리비·운반비 및 기타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5로 정하는 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 적용합니다. 단,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의 비용은 공지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비율이 공지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시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① 광고시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판촉시 사전에 직선거리 500m 내의 가맹점사업자(해당 거리 내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구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 3) 해피포인트 카드 제도(HPC)

해피포인트카드를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1,000원 이상 구매금액에 대한 적립금, 통신비용, 해피포인트카드 시스템 운영비용(시스템 운영비용, 신청서 및 입력비용, 080 서비스 운영비용, VAN 사용료 등)을 부담하되, 가맹본부는 적립금의 50%, 해피포인트카드 시스템 운영비용을 지원합니다.

## 4) 해피오더 및 배달서비스 수수료

해피오더 및 배달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소비자가 해피오더 시스템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일반적으로 제품 결제 금액의 10%이나 구체적인 비율 또는 금액은 연계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가맹본부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서비스 비용 중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이 중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피오더 제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종업원 등이 당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귀하의 피고용인이 당사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당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의 제36조(계약의 해지)의 사유 외에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맹점사업자의 질병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

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한 월 이전 1년간(1년 미만인 경우 가맹점 운영기간 전체) 가맹본부에 매입한 금액의 월 평균에서 2개월분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에 속한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시장조사 접수	D-55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주위점포 정보제공	필요 시 실시	
창업 심의	- 개설심의(개설거절가능) - 개설승인	D-39~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보증금 예치	- 은행에 가맹금, 보증금 예치	D-29(1일)	20,450~50,45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 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및 사인물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69,000~85,5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8~10(9일)	
장비 및 초도상품	- 각종 장비, 사인물 입고	D-3	105,500~128,500
점포 개설	- 가맹점개설 및 영업시작	D-day	
합계		55일 내외	194,950~264,450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 계좌개설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가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분쟁발생시 원만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 절차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 우 : 지원대상 비용의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 지원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 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가맹점사업자 에게 지급하거나 공사비용을 공사 업체에 대납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 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본부가 전부 또는 일부 비 용을 부담한 점포 환경개선 후 그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 영업양도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 가능</li> </ul>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 없음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 VIII.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던킨/던킨도너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교육시간	교육방식	비고
신규 가맹		75시간		

입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의 이해, POS, 식품위생, 서비스 기본 등</li> <li>기본 운영 시스템 이해</li> <li>-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li> <li>- 점주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 함양</li> </ul> </li>   <li>◎ 제조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포장 및 제공 매뉴얼 제작</li> <li>- 음료 제조 실습(커피류, 비 커피류) 등</li> </ul> </li>   <li>◎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관리, 수료식 등</li> </ul> </li> </ul>			집체 교육 및 온라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 교육에 근거한 점포 내 실습 (오픈 ~ 마감)</li> <li>- 판매기술 및 점포운영기술 습득</li> <li>- 위생, 서비스, 판매 등의 매뉴얼 실습</li> </ul> </li> </ul>			직영점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liance Manual의 이해</li> <li>- 위생(점검 결과)/ 서비스(서비스평가, 클레임, 고객충성도) 컨설팅</li> </ul> </li> </ul>	4시간	집체 교육 / 온라인	※ 대상점: 가맹점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재계약 거절 대상점	

\* 교육 수료는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평가는 70점 이상이어야 함

\* 과정별 교육 방법 및 시간은 변동 가능성 있음

\*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은 가맹점포 오픈 2일 이전까지 수료해야 함.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 고
신규 교육	9일(75시간)	1,650 추가인원당 330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최대 3인 입과가능, 이후 추가인원 추가 교육비용 발생)
보수 교육	4시간	無	1. 대상점포 : 가맹점 경영평가(Compliance Manual) 기준에 따른, 재계약 거절 대상점 → 위생, 서비스, 법규위반, 대관점검, 고객클레임

			2. 교육장소 : 해당점포 및 가맹본부 교육센터 필수적으로 교육 3. 교육기한 : 교육 대상선정 후 즉시
--	--	--	--

이와 별개로, 위생점검 적발시 위반 점포의 대표자는 별도의 유상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 해당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사전 승인 必]

###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점포개점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불참 및 거부 시 재계약 거부 및 가맹계약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서울역2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1층102호(서울역사1층)
2	서울	시청역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3(태평로2가)광학빌딩1층
3	서울	선릉역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22(대치동)
4	서울	잠실본동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118(잠실동)1층
5	서울	던킨 라이브 강남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73(서초동)
6	서울	왕십리민자역사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7	경기	평택민자역사	경기도평택시평택로51(평택동)평택민자역3층던킨도넛AK플라자
8	서울	건대스타시티영촌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110(화양동)
9	서울	연세안과병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1(신촌동)
10	경남	창원성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11	경기	화정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화정동)
12	대전	대전터미널서관	대전광역시동구동서대로1689(용전동)
13	광주	광주터미널	광주광역시서구무진대로904(광천터미널1층内던킨도너츠)
14	서울	두산건설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726(논현동)두산건설빌딩1층
15	서울	양재사옥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2620
16	인천	인천터미널	인천광역시 남구 연남로 35 (관교동,인천터미널대합실内)
17	서울	화곡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64
18	인천	부평세립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부평세립병원 외부 1층 던킨도너츠
19	인천	인천공항1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81 번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FB-P5-77
20	인천	인천공항2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81 번지 인천국제고항 여객터미널 FB-P5-42
21	인천	인천공항4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81 번지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FB-C5-58
22	경기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7
23	인천	인천공항3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81 번지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FB-C5-66

24	서울	연신내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2 1층(대조동, 유니온빌딩)
25	서울	공항철도서울역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지상2층(동자동, 서울역)
26	부산	김해공항국내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층, (대저2동, 김해공항국내선 여객터미널)
27	경기	수원터미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28	서울	위례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36 위례아이파크 129, 130호
29	경기	상록수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 103호, 104호(본오동, 서해프라자)
30	서울	구파발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15-40, 4호(진관동, 구파발역환승센터)
31	인천	검암역사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26 1층 6호 검암역 환승통로(검암동)
32	경기	킨텍스1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33	서울	신림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0 지하1층(신림동)
34	경기	구리돌다리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29 107호 (인창동, 쌍용플래티넘선스타워)
35	부산	경성대부경대역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24 (대연동)
36	경기	시흥하늘휴게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5, 2층 214호
37	대전	대전역사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정동)
38	인천	T2인천공항6호	중구 공항로 272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일반동 지하1층
39	인천	T2인천공항7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40	인천	T2인천공항8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1	경기	남양주호평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0 107호(호평동, 씨에이치리베로원)
42	인천	CF인천공항에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3층 (운서동, 인천공항 국제공항 제1T)
43	서울	CF연세세브란스빌 딩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1층
44	경기	CF뉴코아평택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9 뉴코아 아울렛 백화점1층
45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지하1층1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
46	경기	가평휴게소(상)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544 가평휴게소(서울방향)
47	경기	가평휴게소(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540번길 51 가평휴게소(춘천방향)
48	부산	부산역라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0, 104호, 205호, 206호(초량동, 부산역라마다양코르)
49	인천	T1인천공항카오 스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인천공항제1터미널 출국장3층
50	서울	김포공항국제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국제청사1층

51	서울	김포공항국내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2층
52	서울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한림대강남성심병원본관1층
53	경기	서현로데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17, 광림프라자102호
54	대전	대전월평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26, 1층 101-3호(월평동)
55	부산	부산메트로시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48, 1층 101호(용호동, 대성빌딩)
56	서울	흑석DT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101(흑석동)
57	서울	건대입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10, 스타시티영존103호(화양동)
58	서울	DD SPC 스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52, 지상2층(역삼동)
59	울산	울산역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177(울산역내)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년 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71,113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별지 1】식품위생법 위반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치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행정당국의 시정명령 거부 및 영업정지 16일 이상의 경우 즉시해지 할 수 있다.
2. 별지1 위반시 점주 등은 본부가 지정한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별지1의 조치사항을 거부 또는 미이행시 재계약 불가 및 가맹계약해지

## 【별지 2】식품위생법 위반시 주요 행정처분 기준( “식품접객업 기준”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단 위 위반사항 1~5의 경우 3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023년 1월 30일부 시행규칙)

### 【별지 3】 점포환경개선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4】 가맹점 경영평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지 5】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지 6】 물품 내역(2024년 3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지 7】 주요품목 공급가격(2023년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